

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〈기관유형(B)〉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

유형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	
계획 수립(10)	연간 교육 계획 수립(10)	수립	10	
		미수립	0	
교육 실시(90)	기관장(10)	참여	10	
		미참여	0	
		고위직(10)	70% 이상	10
			60% 이상 ~ 70% 미만	8
			50% 이상 ~ 60% 미만	6
			50% 미만	0
	직원(20)	70% 이상	20	
		60% 이상 ~ 70% 미만	15	
		50% 이상 ~ 60% 미만	10	
		50% 미만	5	
	학생(20)	70% 이상	20	
		60% 이상 ~ 70% 미만	15	
		50% 이상 ~ 60% 미만	10	
		50% 미만	5	
	교육방법 및 활용(30)	제2장 27페이지 전문강사* 및 인식개선교육기관** 교육 제2장 28페이지 * (전문강사) 장애인개발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,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** (인식개선교육기관) 보건복지부 지정·위탁 교육기관	일반강사 교육	20
			내부직원 교육	15
표준(정규) 자료 활용 교육			15	
일반 자료 활용 교육			10	
			30	
가점 (10)	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	3회 이상 교육	5	
	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* 마련 * (tip) 내부규정 제도화, 기관 정관·약관 반영 등		2	
	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		2	
	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* 교육 실시 * (tip)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		1	
	합계	100점 (가점 시 110점)		

공통 기준

- (부진기관 기준)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,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
※ 단,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4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
-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빙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
- 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'전문강사'라고 칭하기도 하므로,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